

서울특별시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2462호)

제 안 설 명

성중기 의원

안녕하십니까? 성중기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·동료의원들 앞에서 “서울특별시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은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중 시장이 ‘보행우선구역’ 또는 ‘보행환경개선지구’로 지정하고 필요시 보행안전시설물과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토록 하여 노인·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,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